

의안번호	2212353
의 퇴 인	강명구의원
회 답 일	2025.10.15.
추계번호	25D46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현행법에서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기준을 시·군·구로 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²⁾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

1) 현행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2.27.)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지역임

※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현황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등 시책을 추진(제21조³⁾)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2조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추가될 인구감소지역 및 추진될 시책의 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